

제2024-46호 2024년 5월 17일(금)		시 보 여수시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규칙

여수시 규칙 제839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조례

여수시 조례 제2077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4
여수시 조례 제2078호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
여수시 조례 제2079호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2
여수시 조례 제2080호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여수시 조례 제2081호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32
여수시 조례 제2082호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여수시 조례 제2083호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39
여수시 조례 제2084호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
여수시 조례 제2085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여수시 조례 제2086호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여수시 조례 제2087호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53
여수시 조례 제2088호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56
여수시 조례 제2089호	여수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60
여수시 조례 제2090호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여수시 조례 제2091호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여수시 조례 제2092호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70

회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규칙 제839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을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3조(「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4조(「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 · 행정 · 교육 · 언론”을 “국가유산 · 행정 · 교육 · 언론”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를 “문화유산보호”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를 “국가유산관련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를 “국가유산관련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로의”를 “지정유산으로의”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담당부서”를 “국가유산담당부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한다.

제6조(「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체육시설 · 문화재”를 “체육시설 ·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다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문화재””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문화산업국) ① (생 략) ② 문화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u>문화재</u> 발 굴·관리, 문화예술행사 2. ~ 21. (생 략)	제6조(문화산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u>국가유산</u> --- ----- 2. ~ 21. (현행과 같음)

2.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u>문화재에 대한 감면</u>) (생 らく)	제4조(<u>국가유산에 대한 감면</u>) (현 행과 같음)

3.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① (생 략)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정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u>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u></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u></p>
---	--

4.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8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2. (생 략)</p> <p>3. 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 관련 전문가</p> <p>4. · 5. (생 략)</p> <p>6. 그 밖에 문화재 · 행정 · 교육 · 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p> <p>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p>	<p>제8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국가유산 · 행정 · 교육 · 언론-----</p> <p>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 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 국가유산청장----- ----- ----- -----.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 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③ ----- ----- 국가 유산청장----- ----- ----- -----.

5.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p>민속자료 등(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말한다.</p>	<p>-----.</p>
<p>2. (생략)</p>	<p>-----.</p>
<p>제3조(위원회 설치) ① · ②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은 <u>문화재관련업무</u> 소관국장으로 한다.</p>	<p>제3조(위원회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u>문화재</u>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 <u>국가유산관련업무</u> -----.</p> <p>④ ----- <u>국가유산</u> -----</p> <p>-----</p> <p>-----.</p> <p>-----.</p> <p>-----.</p>
<p>⑤ (생략)</p>	<p>-----.</p>
<p>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u>문화재관련업무</u>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 <u>국가유산관련업무</u> -----</p> <p>-----.</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p> <p>-----.</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u>지정</u></p>	<p>4. ----- <u>지정</u></p>

<p><u>정문화재로의</u> 승격과 국가 또는 도 <u>지정문화재의</u>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p> <p>5. <u>지정문화재의</u> 복원·보존·보호·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p> <p>6. (생략) ② (생략)</p> <p>제6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u>문화재관련</u>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p> <p>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생략) ②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u>문화재담당부서</u> 및 위원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③ (생략)</p> <p>제15조(경비보조 등) ① (생략)</p>	<p><u>유산으로의</u> ----- - <u>지정유산의</u> ----- -----</p> <p>5. <u>지정유산</u>----- -----</p> <p>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관련</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유</u> <u>산담당부서</u>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경비보조 등) ① (현행과</p>
--	--

<p>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개인·단체)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u>도지정문화재</u>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퍼센트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 (생략) 제17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생략) ② 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u>문화재</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은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u>문화재보호법</u>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같음)</p> <p>② ----- ----- ----- <u>도지정</u> <u>유산</u>----- -----.</p> <p>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u>----- -----. 제19조(준용 규정) ----- ----- - <u>문화유산법</u> ----- -----.</p>
---	---

6.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p>제4조(유물의 구입) ① ~ ③ (생략) 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p>	<p>제4조(유물의 구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p>
--	---

<p>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 <u>지정문화재</u>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p> <p>⑤ (생 략)</p> <p>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② (생 략)</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u>문화재</u> 및 유물 관련 분야 대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 ⑧ (생 략)</p>	----- <u>지정유산</u> ----- ----- ----- ---.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국가유산</u> - ----- ----- -----.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

7.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p>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p> <p>② 위원은 <u>문화재</u>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p>	<p>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국가유산</u> ----- ----- ----- -----. </p>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8.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u>체육시설·문화재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u> 3. ~ 13. (생 략) 	<p>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체육시설·국가유산</u></p> <p>-----</p> <p>3. ~ 13. (현행과 같음)</p>
--	--

9.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 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제4조(지원사업 등) ① ----- ----- -----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가 설치 · 관리하는 <u>문화재</u>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 <u>국가유산</u>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 나. (생 략)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 ----- ----- -----. 1.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문화유산법」 ----- 국가유산 및 -----
---	--

11.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 행과 같음) ② -----

<p>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6. <u>문화재</u> 복원공사의 경우</p> <p>7. (생 략)</p> <p>③ (생 략)</p>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가유산</u>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12. 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p>제6조(설치장소) ① (생 략)</p> <p>② <u>문화재</u>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6조(설치장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유산</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

여수시 조례 제2078호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 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축제 등과”를 “축제, 안전관리, 양성평등 등과”로 한다.

제5조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별 평가 결과 검토 및 반영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제2항 중 “20명 내외”를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④ 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심의)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자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축제 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축제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p>제4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u>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 <u>위원으로</u>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축제, 안전관리, 양성평등 등과-----</u></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생략)</p> <p>1. (생략)</p> <p>2. <u>축제별 사업계획 예산 심의</u></p> <p>3.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에 의한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u></p> <p>4.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u></p> <p>3. <u>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u></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9월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내외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u>추진위원장</u>은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신설></p>	<p>제1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5명</u> 이내로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u> ----- -----</p> <p>③ <u>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u> ----- -----</p> <p>④ <u>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u> <u>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12조(추진위원회의 기능)</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신설></p> <p>② (생략)</p>	<p>제12조(추진위원회의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업계획서의 심의)</p> <p>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9월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자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p> <p>② 예산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p>	<p>제13조(사업계획서의 심의)</p> <p><삭 제></p> <p><삭 제></p>

	<p>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자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p>
제14조(축제사후평가 검토 및 반영)	<p>제14조(축제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p> <p><삭 제></p>
<p>① 추진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추진위원장은 축제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u>제15조<신 설></u></p> <p><u>제16조<신 설></u></p> <p><u>제15조 ~ 제19조 (생략)</u></p>	<p>제15조(축제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6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p>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5조 ~ 제19조와 같음)</p>
--	--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 2.“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전라남도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고건의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사전기획
2.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지원 및 수요기술 발굴
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4.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여수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u> <u>을 포함한 권역별 20명 내외의</u> <u>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u> <u>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u> <u>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u> <u>면 예외를 인정한다.</u></p> <p>② (생략) <u>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u> <u>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u> <u>사람이 되고, 인허가 및 해상풍</u> <u>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u> <u>직 위원이 된다.</u></p> <p>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u>의원</u>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u>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3.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 <u>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u></p>	<p>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u>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u>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u> <u>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u> <u>관 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u> <u>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u> <u>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u> <u>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u> <u>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u> <u>다.</u></p> <p>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
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
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근무
한 사람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자

7.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역의 주
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
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 묘도에 액화천연가스(LNG) · 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 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사무소) 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만 건설 및 운영
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 · 임대
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운영
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② 시는 전라남도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 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④ 시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이사 추천) 시장은 도지사에게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 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조직 및 정원
7. 임직원

8. 재무회계
9. 정관변경
10. 주식발행
11. 주주총회
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설립등기) 특수목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여수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제2항 관련)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를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출산지원금”</u>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p><u><신 설></u></p> <p>제4조(지원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삭제</u> 2. <u>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p>② · ③ (생 략)</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출산 지원금”</u>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 ----- -----. 3. <u>“정부지침”</u> 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p>제4조(지원액)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 략)</p> <p>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65세 이상의 사람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생 략) <p>제7조(입소비용) ① 수급자가 장기 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한다. <p>② 제5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용은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p>제3조(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입소대상)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현행과 같음) <p>제7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연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수 시의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의 보호 및 여수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6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내 · 국제협력)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 기술의 교류 ·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 복지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
3. 농어업근로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82조”로 하고, “금갓고운”을 “싱싱365 섬섬여수”로 한다.

제14조 중 “제40조”를 “제28조”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 상표네임 :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인 섬섬여수에 싱싱 365를 결합하여 365개의 섬과 365일 싱싱한 농산물을 상징



- ※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규격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싱싱365 섬섬여수”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의하여 사용한다.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
 -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누적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

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 시설에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 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을 삭제한다.

제6조의3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